

의견서 내용 발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추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어렵게 하여 사실상 제한하는 현 고용허가제 제도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유엔 인권 기구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조건, 숙식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을 추가한 것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변경의 지역제한 추가는 이주노동자의 관련 국제인권법,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거주지를 정하여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하는 곳의 제한이 사는 곳에 대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장 9년 8개월 간 일하는 경우 거주지제한은 그 전체 기간에 유지됩니다. 이전에도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지역제한이 더해지는 경우 그 기회와 선택의 폭은 더욱 줄어들어 지금보다도 더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폭력 피해, 폭행 등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시에도 타지역 이동이 어려워 같은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추가 제도의 도입 그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상 재취업 시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지역제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번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동의를 받아 형식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이번 추가제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국제규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에 위반되는 정책을 법적 근거없이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정책이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오로지 사용자의 편익에 부합하게 이주노동자를 수단화하는 인권침해적인 정책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